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0일, 임광현의원 등 2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광현의원)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사전 특별징수·예정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89조제3항 및 제103조제13제2항 등).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로서,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제한 순이익을 산출하여 20~25%의 세율로 분류과세(종합소득과 별도 과세)하는 국세 세목임.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금융회사가 반기별(매년 1월·7월)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달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한 후, 최종적으로 차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2단계 납부구조인데,

개정안은 이 원천징수·예정신고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차년도 5월에 일시 확정신고·납부하게 하는 「의안번호 2204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9인)」에 연동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및 예정신고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 제도는 세수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과세당국에는 유리한 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조세가 조기 납부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제도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① 신설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심리적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원천징수·예정신고를 통한 조기 납세와 원천징수금액의 확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소득 인출 제한 제도 등이 이러한 저항을 가중시켜 투자자의 국내금융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고, ② 원천징수를 위한 금융회사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려는 법률안을 정부 등이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폐지 여부를 지켜보며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